

#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 회계 설치조례

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 3 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 정비 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 방지 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 4 조(지방채 발행등)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 5 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 6 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향교 재산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 3 조 (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 4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의 비행연습, 기계의 제작·조립, 운전등 실험·실습 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면제신청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서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제정조례

서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 위원은 보건소장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 2인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3. 타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 4 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 6 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는 의료보

장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의결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1항중 “4기통”을 “2000cc”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

방공동시설세 및 “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별표) :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별지 첨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7, 58, 59, 60, 64, 65, 67,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동이 제한된”으

로 한다.

제 3 조중 “과세면제에”를 “경감에”로 한다.

제 4 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산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서산군농의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소득원 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소득원 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의 소득원 개발사업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조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제6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9조의”로 하여 제4호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의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장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아 온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1항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을” 도시계획세 및”으로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및”을 “종합토지세 및”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수입금액을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 (일수)}} \times 365$$

3.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으로하고 동조 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

## 서산군 음성나환자 소유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서산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서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대불금 상환등) “1호중” 5만원 미만은 1년이내를 “10만원 미만은 4회로 하고 “제2호중” 5만원이상 15만원 미만은 2년이내를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하고” “3호중” 15만원 이상은 3년이내를 “2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며”

- ③항중 “기금부담으로”를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손처리한다”로 개정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1”중  
“명칭란”의 “언암보건진료소”를 “기지  
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란 “해미면  
언암리”를 “해미면 기지리”로 하며,  
“관할구역”란 “언암리, 석포리, 기지  
리, 신정리”중 “언암리, 석포리”를 삭  
제하고 “양림리”로 추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지방공사의료원 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서산군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군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 한 조례폐지조례

서산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